



제 429국회 (정기회)
제 10차 정무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서민금융안정기금의 설치〉

■ 강준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131호)

2025. 11.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5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5
2. 개정안의 발의 배경 및 기금 신설 필요성 등	6
3. 주요 내용별 검토	9
가. 기금의 설치 및 계정 구분	9
나. 기금의 관리·운용·회계 등	14
다. 진흥원의 업무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	17
라. 채권 발행 근거 마련	24
마. 서민금융보증계정의 재원 조성, 보증한도 상향 등	26
바. 자활지원계정의 보증료 규정 삭제 등	33
사. 진흥원의 자료제공 요청 범위 확대	36
아. 진흥원 임직원의 손해배상 책임	39
자. 기금 설치에 따른 조문 정비	41
차. 부칙	4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준현의원 등 26인
2. 제 안 일 : 2025. 9. 19.
3. 회 부 일 : 2025. 9.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을 설립하고, 진흥원이 정부의 출연금과 민간재원(금융회사의 출연금, 휴면예금, 기부금 등)으로 구성된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서민금융보완계정, 자활지원계정을 운용하여 서민금융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렇게 서민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상시적인 서민금융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출연금의 경우 2026년 10월 8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출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정부의 출연금 또한 매년 출연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장기적인 지원 계획의 수립이 불가능한 상태로, 상시적·안정적인 서민금융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먼저, 신용보증 사업의 경우 진흥원에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

용보증을 통해 신용을 보강해줌으로써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민·취약계층이 금융회사의 보증대출 이용 중에 장기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진흥원이 대위변제를 해주는 구조임.

이 경우, 진흥원은 신용보증 이후의 경기상황 등에 따라 서민·취약계층의 장기연체율이 증가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정부가 보증하는 기금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매년 정부 예산 편성 등을 통해 신용보증 공급 이전에 미리 신용보증 재원을 확보하는 구조이므로, 향후 발생가능한 위험에 대한 대비체계가 갖춰지지 못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음.

한편, 신용보증을 통한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다른 금융공공기관의 경우를 보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국가재정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갖추고 신용보증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에 진흥원은 금융회사 및 정부 출연금 등 재원의 한시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서민금융지원 사업의 수행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또한 자활지원 사업의 경우 신용보증을 통해 서민금융 공급이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출을 통해 자금을 공급해야 하나, 사업재원이 부족하여 정부 출연금 등을 통해 보다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교육, 컨설팅 및 복합지원 등 비금융 서비스도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서민의 금융생활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진흥원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서민금융보증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해당 기금에 편입함으로써 서민금융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하고,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하여 진흥원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45조의2).
- 나. 진흥원의 정관에 서민금융안정기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서민금융안정기금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해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조제2항제5호 신설).
- 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에서 진흥원의 부원장을 제외하여 10명으로 위원 수를 조정하고, 기금 관리 및 운용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위원을 위촉하도록 함(안 제9조).
- 라. 진흥원의 업무에 기금 및 계정에 대한 관리·운용 업무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2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 마. 서민금융안정기금은 진흥원이 관리·운용하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되, 진흥원이 회계연도 개시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45조의2 및 제45조의5 신설).
- 바. 서민금융안정기금 내 서민금융보증계정의 부담으로 서민금융안

정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서민금융안정기금에 손실이 생기면 이익금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5 및 제45조의6 신설).

사. 서민금융보증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는 총액한도는 2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함(안 제49조).

아. 서민금융안정기금 내에 서민금융보증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46조, 제55조의2).

자. 진흥원의 임직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진흥원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업무를 처리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흥원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82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32호) 및 「부담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기금의 설치 등 (\$45의2~\$45의3)	- 진흥원에 법정기금인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계정 구분) 서민금융보증계정 + 자활지원계정
기금의 관리·운용·회계 등 (\$45의4 및 \$45의5)	(관리·운용 주체)진흥원 (운용 방식) 금융회사에의 예치 등 (회계·결산) 결산 이익금 발생 시 전액 적립 결산 손실금 발생 시 적립금으로 보전 → 부족 시 정부 보전
진흥원의 업무 등 (\$7~\$9, \$16, \$24)	- 진흥원의 정관·업무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기금 관련 사항 추가 - 운영위원회의 구성 변경
채권 발행 (\$33 및 \$45의6)	진흥원 부담 채권(\$33) 및 기금 보증계정 부담 채권(\$45의6) 각각의 발행 근거 마련
서민금융보증계정의 설치 등 (\$42, \$46~49, \$52, \$54)	- 서민금융 보완계정의 명칭을 서민금융 보증계정으로 변경 ※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재원 조성) 휴면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추가 (보증 한도) 보증계정의 법정 보증배수 상향 ※ 정부·금융회사로부터의 출연금 및 이월이익금의 15배→20배 (구상권 소멸시효)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권 소멸시효 단축 ※ 10년 → 5년
자활지원계정의 보증료 규정 삭제 등 (\$55의2, \$55의4 삭제, \$55의5)	자활지원계정의 별도 보증료 규정 삭제 및 보증계정의 보증료 관련 규정 준용
진흥원의 자료제공 요청 범위 확대 (\$81)	자료제공 요청 범위에 복합지원* 관련 업무내용 추가 *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종합상담·교육·정보제공,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등의 알선
진흥원 임직원의 손해배상 책임 (\$82의2)	진흥원의 임직원이 진흥원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배상 책임 명시
기금 설치에 따른 조문 정비(\$2 등)	기금 설치에 따라 관련 조문에 주체·명칭 등 반영 ※ (제2조) 신용보증주체 (제26조) 사업수행기관 지원주체 (제37조) 기부금품 접수주체 (제38조) 회계의 구분처리 및 계정 간 거래
부칙	(시행일) \$8, \$9, \$16, \$24, \$54, \$81: 공포 후 6개월 그 외 조항: 2027년 1월 1일 (경과조치) 종전의 보완계정·자활계정은 기금에 설치하는 보증계정·자활계정으로 봄

2. 개정안의 발의 배경 및 기금 신설 필요성 등

-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은 정부 출연금, 금융회사 출연금, 휴면예금 등을 토대로 ‘서민금융보완계정’ 및 ‘자활지원계정’ 등을 운용하여 서민에 대한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음.
- 그런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이라 함)」상 보완계정을 조성하는 주된 재원인 금융회사의 출연금 납입 근거가 2026년 10월 8일까지로 한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정부 출연금은 매년 편성 규모가 결정되는 구조여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제약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현재 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 지원사업들은 상품별·사업별로 재원이 구분되어 있어 특정 상품의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 재원을 즉각적으로 변경하여 활용하기는 어려운바, 경기 변동이나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상품별 수요 증감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함.
- 이에 개정안은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여 기금 조성 재원을 법제화하고, 자체적인 기금채 발행 및 정부의 손실보전 근거 등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법정 보증배수를 확대함으로써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재원 기반을 마련하고 서민금융 보증공급의 탄력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 현재는 진흥원 결산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기금 결산상 손실금을 적립금으로 충당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보전하도록 함으로써¹⁾ 기금의 안정성이 제고되고 경기변화 등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임.
- 또한 일반회계는 단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특정 상품·사업별로 구분 편성되어 재원의 탄력적인 운용에 제약이 있으나, 법정기금 설치 시 일정 범위 내에서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변경²⁾을 통하여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하거나 상품을 신설하는 것이 가능해지는바, 경기변화 등 시장수요를 보다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³⁾.

- 1) 개정안 제45조의5(기금의 회계 및 결산) ⑤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 2) 「국가재정법」 제70조에 따라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30% 이내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자체변경(또는 기획재정부 협의 변경) 할 수 있음.
- 3) 기금과 일반회계의 지출 탄력성 비교 관련 연구자료

□ (요약) 기금의 계획 대비 지출 증감의 **평균 변동률은 8.9%**로 일반회계 평균 변동률 1.7%에 비해 **5.2배 탄력적**

< '07년~'17년 회계·기금 세출(지출)의 계획 대비 증감 >

구분	변동 범위	평균 증감률	평균 변동률
기금	0.58% ~ 28.64%	8.9%	8.9%
일반회계	-4.39% ~ 2.09%	-0.7%	1.7%
특별회계	-11.74% ~ 5.49%	-4.5%	5.9%

※ 출처 : 한국재정정보원, 기금의 신속적 운용과 시사점('18.12)

□ 참고로, 추가적인 기금 재원 확보를 위하여는 금융회사의 출연금 비율 상향 등 추가적인 입법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보완계정에 대한 금융회사 출연조항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⁴⁾(이인영의원 대표발의)가 발의되어 있음.

○ 또한 진흥원은 2025년 10월 서민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영방안 관련 컨설팅 용역을 발주하였는바⁵⁾, 기금 신설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 기금 설치 관련 단계별 실행 로드맵, 기금운용계획 수립 관련 수입·지출 구조 분석 및 세무·회계 이슈 등에 대한 용역이 2026년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인 점을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4) 의안번호 제2214131호, 2025. 11. 11. 발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227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약 6개월

3. 주요 내용별 검토

가. 기금의 설치 및 계정 구분

- 개정안은 진흥원에 법정기금인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내 계정을 서민금융보증계정 및 자활지원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운용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8절 서민금융안정기금</u>
<u><신설></u>	<u>제45조의2(서민금융안정기금의 설치)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하여 진흥원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u>
<u><신설></u>	<u>제45조의3(계정의 구분) 기금은 제46조에 따른 서민금융보증계정 및 제55조의2에 따른 자활지원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u>

- 현재 진흥원은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서민금융보완계정, 자활지원계정 및 고유계정을 운용하고 있으며, 각 계정별로 고유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경우 금융회사가 출연하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예금등⁶⁾을 재원으로 조성되며, 이를 휴면예금등의 원권리자에게 반환하거나 원권리자 보호활동을 위한 조사·연구에 활용하되, 휴면예금등의 운용수익금은 서민금융보완계정 및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되어 서민금융 지원사업 수행에 이용됨.
- 서민금융보완계정의 경우 정부·금융회사의 출연금, 보증료 수입금,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조성되며, 이를 햇살론⁷⁾,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사업 등 신용보증을 통한 서민층 대상 자금 공급에 활용하고 있음.
- 자활지원계정의 경우 정부 출연금, 민간 기부금품, 휴면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되며, 이를 불법사금융예방 대출, 미소금융⁸⁾ 등 대출사업, 청년도약계좌 등 자산형성사업 수행, 그리고 금융교육, 신용·부채 관리 컨설팅, 취업 연계 지원 등 비금융 자활지원 사업에 활용하고 있음.

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휴면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휴면예금: 금융회사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

나. 실기주 과실(失期株 果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에 따라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명의인 주권(이하 “실기주”라 한다)의 권리행사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수취하여 10년 이상 관리한 배당 등 과실(금전으로 한정하고 금전 이외의 과실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포함한다)

7)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뱅크 등

8) 미소금융 기업·은행채단 및 지역법인을 통해 창업·운영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사업

○ **고유계정**의 경우 진흥원 설립 당시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으로 부터 납입받은 자본금 등으로 재원이 조성되며, 이를 통해 자본금·공통운영비 관리, 맞춤대출 서비스 등 금융정보가 부족하거나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가 있는 서민층에게 소득·신용도 등에 부합하는 금융상품을 알선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개정안은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면서 기존 진흥원 내에서 관리·운용하고 있던 2개 계정(서민금융보완계정, 자활지원계정)을 기금 내 계정으로 이관시키려는 것으로, 취약서민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사업을 기금 내에서 통합하여 안정적·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기존 진흥원 내 ‘서민금융**보완**계정’의 명칭이 기금 편입과 함께 ‘서민금융**보증**계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이 함께 정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기획재정부는 개정안과 같이 기금 내에 서민금융보완계정(이하 ‘보완계정’이라 함)과 자활지원계정(이하 ‘자활계정’이라 함)을 설치하는 것 외에도 별도의 ‘자산형성지원계정’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출하였음.

○ 현재 자활계정에서는 청년도약계좌 등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출사업, 비금융사업을 수행 중인데, 이 중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자

활계정 내 타 사업과 목적 및 재원 측면에서 상이한 부분이 있어 별도 계정으로 분리하여 운용할 필요성이 인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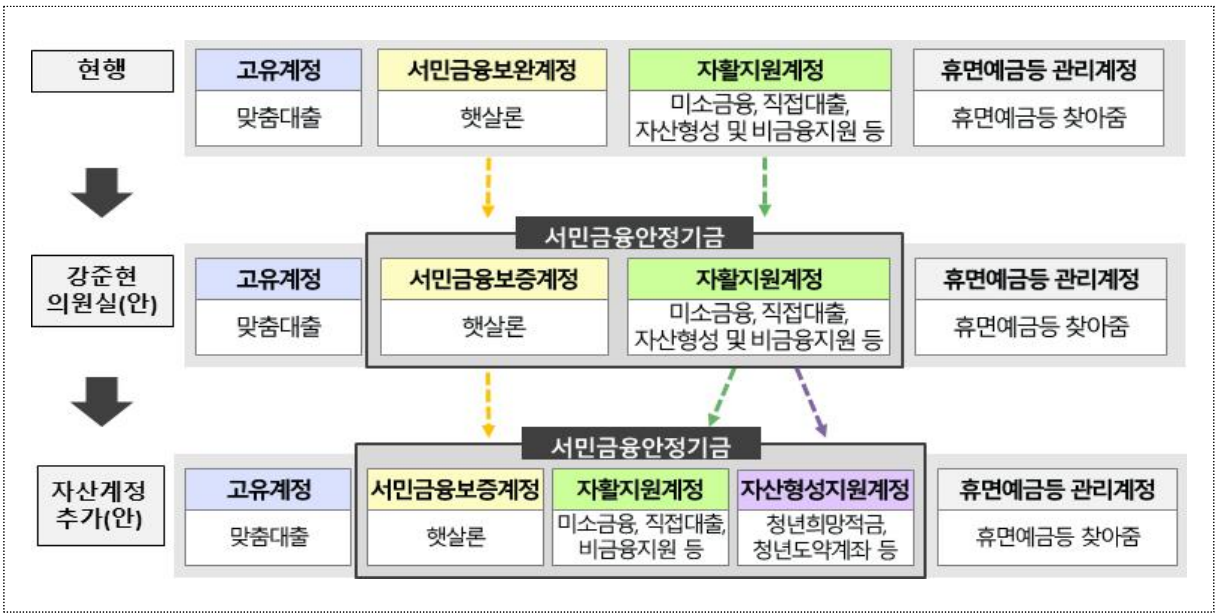
[자활지원계정 내 사업 유형별 비교]

구분	① 자산형성지원사업	② 대출사업	③ 비금융사업
사업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청년미래적금('26년 출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미소금융 등	금융교육, 컨설팅, 복합지원 등
재원	정부 출연금	휴면예금등 운용수익, 민간 기부금	휴면예금등 운용수익
특성	대상	저신용·저소득 서민·취약계층	
	목적	서민·취약계층 대상 대출 지원	비금융서비스 제공으로 서민의 경제적 자활 지원

(자료: 금융위원회)

- 따라서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한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운용할 경우 재원-용도 간 연관성 및 계정간 차별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기금 내 계정 구분 방안 비교]



(자료: 금융위원회)

□ 참고로, 법정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국가재정법」 [별표2](기금 설치 근거법률) 및 [별표3](금융성 기금)의 개정이 필요하며, 부담금 성격을 가지는 금융회사의 출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의 개정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강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⁹⁾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¹⁰⁾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9) 의안번호 제2213132호

10) 의안번호 제2213136호

나. 기금의 관리·운용·회계 등

□ 개정안은 서민금융안정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를 진흥원으로 규정하고, 기금의 운용방식을 금융회사에의 예치, 채권 매입 등으로 정하며,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변경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결산상 이익금은 전액 적립하되 손실금 발생 시 해당 적립금으로 보전하게 하며, 적립금만으로 손실 보전에 부족할 시 정부가 손실금을 보전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4 및 제45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45조의4(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진흥원이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금융회사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금융회사가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4. 그 밖에 여유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신설>	제45조의5(기금의 회계 및 결산)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진흥원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기금에 대한 결산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⑤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 기금 결산상 손실금 발생 시 1) 적립금 2) 정부 보전 순으로 보전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결손 보전 방식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적립금만으로 결손 보전이 어려울 시 정부가 보전하도록 규정할 경우, 금융시장 여건에 따른 급격한 대위변제 증가 등 예측하지 못한 상황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토대로 보다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보다 구체적으로, 기금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여 추가적인 정부출연금을 차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전년도 말에 계획안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보전할 예정임¹¹⁾.

11) 다만, 위기상황으로 법정 보증배수 초과, 유동성 위기 등이 우려되어 당해연도 내 손실보전이 필요한 경우, 연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손실을 보전할 예정임.

다. 진흥원의 업무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

□ 개정안은 기금의 관리·운용기관인 진흥원의 정관에 기금·계정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진흥원의 업무범위에 기금·계정의 관리·운용 관련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 또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려는 등의 내용임(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 및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7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7. (생략) 8. 제33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u><신설></u> <u><신설></u> 9. ~ 14. (생략) ② (생략)	제7조(정관) ① ----- ----- -----. 1. ~ 7. (현행과 같음) 8. 제33조 및 제45조의6----- ----- 8의2. 제45조의2에 따른 서민금융 안정기금에 관한 사항 8의3. 계정에 관한 사항 9. ~ 1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생략)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4. (생략)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생 략)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생 략)

2. 진흥원의 부원장

3. ~ 4. (생 략)

5. 소비자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별
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 위촉하는 사람 6명. 이 경우
2명은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금 규모 등을 고려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개의
금융협회의 장으로부터 각각 1
명씩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가. (생 략)

나. 소비자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연구
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
는 사람

다. ~ 라. (생 략)

5.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

10명-----.

②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 4. (현행과 같음)

5. 소비자 보호 또는 기금 관리
및 운용에 -----

----- 3명.

가. (현행과 같음)

나. 소비자 관련 분야를 전공하
거나 기금 관리 및 운용에
경험이 풍부한-----

--

다. ~ 라. (현행과 같음)

마. 그 밖에 금융·경제·사회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신 설>

③ 제2항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생 략)

제16조(이사회) ① 운영위원회의 회
의에 부의할 사항과 그 밖에 정
관으로 정하는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
기 위하여 진흥원에 이사회를 둔
다.

② ~ ⑤ (생 략)

제24조(진흥원의 업무) ① 진흥원은

마. 금융·경제·사회 관련 분
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
구원 또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사람

6.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집행
간부로서 운영위원회 위원의 추
천 당시를 기준으로 소속 금융
회사의 제47조제2항 및 제47조
제3항에 따른 출연금 누적 규모
가 가장 큰 3개의 금융협회의
장으로부터 1명씩 추천을 받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③ -----
-----. 다만, 위원의 사임 등
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
간으로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이사회) ① 진흥원의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진흥원의 업무) ① -----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3의2. 기금·계정의 관리 및 운용
4. ~ 16. (생략)	4. ~ 1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현재 진흥원에는 진흥원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예산의 편성·변경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진흥원의 원장 등 총 11인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음.

○ 개정안에 따라 법정기금을 설치할 경우 「국가재정법」¹²⁾ 및 법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함.

12) 「국가재정법」 제74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2. 제7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제73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기금관리주체의 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2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은 이를 심의회로 보며, 그 위원회 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2항 각 호의 심의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3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4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이에 개정안은 현재 11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회의 정수를 10인으로 감축하고, 위원 구성 시 기금 관리 및 운용 관련 전문성을 자격요건으로 포함시키며, 출연금 누적규모가 큰 금융협회의 장에게 위원 3인의 추천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임.

[개정안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변화]

현행		개정안	
구 분	인원	구 분	인원
진흥원의 원장	1	진흥원의 원장	1
진흥원의 부원장	1	<삭 제>	-
기획재정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좌 동)	2
금융감독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	(좌 동)	1
소비자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u>6명</u>. ※ 이 중 2명은 출연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개의 금융협회의 장으로부터 각각 1명씩 추천을 받아 위촉 가. 소비자단체 5년 이상 근무 경력 나. 소비자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 경력	6	소비자 보호에 관한 학식과 <u>기금 관리 및 운용</u>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u>3명</u>. 가. (좌 동) 나. 소비자 관련 분야를 전공하거나 <u>기금 관리 및 운용</u>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 경력	3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 경력 마. 그 밖에 금융·경제·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다. (좌 동) 라. (좌 동) 마. 금융·경제·사회 관련 분야의 <u>박사학위를 취득한 후</u>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u>연구원 또는 부교수 이상의</u> <u>직에 5년 이상 근무 경력</u>	
<신 설>	-	<u>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u> <u>집행간부로서 운영위원회</u> <u>위원의</u> <u>추천 당시를 기준으로 소속</u> <u>금융회사의 제47조제2항 및</u> <u>제47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 누적</u> <u>규모가 가장 큰 3개의</u> <u>금융협회의 장으로부터 1명씩</u> <u>추천을 받아 금융위원회</u> <u>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u>	3

□ 개정안에 따르면 진흥원 내 설치된 운영위원회가 진흥원의 업무운영이
나 진흥원 예·결산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사항
까지 심의·의결하게 되는바, 운영위원회의 기금 관련 전문성을 제고하
고, 출연금 납입을 통해 기금의 주요 재원을 조성하는 금융회사의 참여
권을 확대하는 개정내용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 한편, 최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2026년 1월 2일부터 기획재정부
가 재정기획부 및 기획예산처로 개편될 예정인바, 「정부조직법」
부칙상 타법 개정사항¹³⁾에 따라 「서민금융법」 제9조(운영위원회

1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일부개정) 부칙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의 구성)제2항제3호의 위원 지명주체가 ‘기획재정부장관’에서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 그런데 예산 및 기금 관련 사항은 기획예산처 소관 사무로 개편되었는바¹⁴⁾, 금융위원회 수정의견과 같이 운영위원회 위원 지명 주체는 ‘기획예산처장관’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정부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한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현행 서민금융법	2026. 1. 2 시행예정 서민금융법	금융위원회 수정의견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 2. (생략) 3. 기획재정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 5. (생략) ③ ~ ④ (생략)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 5.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 2. (생략) 3. 기획예산처장관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 9. (생략) ③ ~ ④ (생략)

<60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일부개정) 제23조(기획예산처) 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둔다.

라. 채권 발행 근거 마련

- 개정안은 기금 내 보증계정의 부담으로 진흥원이 서민금융안정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에 보완계정의 부담으로 진흥원이 발행하던 채권은 진흥원의 자체 부담으로 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제45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채권의 발행) ① 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46조에 따른 서민금융보완계정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u><신설></u>	제33조(사채의 발행) ① ----- ----- ----- ----- -진흥원-----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5조의6(서민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① 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46조에 따른 서민금융보증계정의 부담으로 서민금융안정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기금이 발행하는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

	<u>증권으로 본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 현행 「서민금융법」 제33조¹⁵⁾는 진흥원이 운영위원회의 의결 및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보완계정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¹⁶⁾.

□ 개정안은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면서 기금과 진흥원 각각의 채권 발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히 기금 내 보증계정의 부담으로 기금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보강하기 위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 「서민금융법」 제47조제1항제7호는 ‘보완계정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을 보완계정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금융위원회는 기금채로 조달하는 자금은 개정안에 따른 보증계정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진흥원의 부담으로 조달하는 자금은 진흥원의 고유계정 소관 사업 수행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임.

1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채권의 발행) ① 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46조에 따른 서민금융보완계정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이 발행하는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 증권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참고로 현재까지 진흥원의 채권 발행 사례는 없음.

마. 서민금융보증계정의 재원 조성, 보증한도 상향 등

- 개정안은 기존 서민금융보완계정을 기금으로 이관하면서 그 명칭을 ‘서민금융보증계정’으로 변경하고, 보증계정의 조성재원에 휴면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을 추가하며, 보증계정의 법정 보증배수를 15배에서 20배로 상향하고,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채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안 제42조,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 제52조 및 제54조).

현행	개정안
제42조(휴면계정의 용도) 휴면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생략) <u><신설></u> 2. ~ 5. (생략) 제8절 서민금융보완계정	제42조(휴면계정의 용도)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서민 <u>금융보증계정</u> 으로의 전출 2. ~ 5. (현행과 같음)
제46조(서민금융보완계정의 설치) 신용보증을 통하여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u>진흥원에 서민금융보완계정(이하 “보완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u>	제9절 서민금융보증계정 제46조(서민금융보증계정의 설치) - ----- ----- ----- <u>기금에 서민금융보증계정(이하 “보증계정”이라 한다)을-----.</u>
제47조(<u>보완계정</u> 의 조성) ① <u>보완계정</u> 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	제47조(<u>보증계정</u> 의 조성) ① <u>보증</u> -----

원으로 한다.

1. ~ 4. (생략)

5. 보완계정의 운용수익금

<신설>

6. (생략)

7. 보완계정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조달한 자금

8. 그 밖에 보완계정의 조성을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금융회사 중 다음 각 호의 자
는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진흥원에 출
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
당하는 자는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만분의 6 이상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
른 금액을 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③ 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중
보완계정의 신용보증을 받은 개
인의 채권자인 금융회사는 해당
신용보증금액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1. ~ 4. (현행과 같음)

5. 보증-----

5의2. 제42조제1호의2에 따른 휴
면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6. (현행과 같음)

7. 보증-----

8. -----보증-----

② -----

-----기금-----
-----.

-----기금-----.

1. ~ 5. (현행과 같음)

③ -----보
증-----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진흥원에 출
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율은 개인에 대한
대출금의 부실률 등을 감안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48조(보완계정의 용도) 보완계정
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
다.

1. ~ 2. (생 략)

2의2. 보완계정 부담으로 발행하
는 채권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보완계정의 조성·운용 및 관
리를 위한 경비

4. 신용보증상품 개발 및 보완계
정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한 조
사·연구

5. 그 밖에 보완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용도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용도

제49조(보증의 한도) ① 진흥원이
보완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는 총액한도는 제47조제1항제1
호 및 제2호의 자금과 이월이익
금을 더한 금액의 15배를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② 진흥원이 보완계정의 부담으
로 같은 개인에 대하여 보증할

----- 기금-----

-----.

-----.

④ (현행과 같음)

제48조(보증계정의 용도) 보증-----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보증-----

3. 보증-----

4. -----보증-----

5. -----보증-----

제49조(보증의 한도) ① -----보

증-----

-----20배-----

-----.

② -----보증-----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는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 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 ----- -----.
제52조(보증료 등) ① 진흥원은 보 완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는 자 로부터 그 신용보증을 받는 자의 신용도와 보완계정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제52조(보증료 등) ① -----보 증----- ----- -----보증-----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4조(구상권의 행사 등) ① ~ ④ (생략)	제54조(구상권의 행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구상채권은 <u>10년간</u>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⑤ -----5년간----- -----.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금융회사의 출
연금, 보증료 수입금,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운용수익금 및
보완계정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조달한 자금 등으로 정하
고 있음.

○ 보완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는 한도는 정부·금융회사의
출연금 및 이월이익금을 더한 금액의 1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법 시행령은 구
체적인 보증한도를 15배로 정하고 있음.

○ 또한 진흥원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발생하는 구상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에서 보완계정을 신설 기금으로 이관하면서 해당 계정의 명칭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그 용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 또한 진흥원이 보증계정의 부담으로 할 수 있는 보증의 한도를 15배에서 20배로 상향하는 것은 진흥원이 수행하는 정책서민금융 공급의 탄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최근 5년간 진흥원 보완계정의 보증배수 현황]

(단위: 배)

구 분	2021년 말	2022년 말	2023년 말	2024년 말
서민금융보완계정	13.2	11.5	25.3	13

※ 2021년 10월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서민금융보완계정 신설

(자료: 금융위원회)

○ 그리고 진흥원 구상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는 「상법」¹⁷⁾과의 체계와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17)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한편, 현행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은 보완계정의 조성재원인 금융회사의 출연금 납입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¹⁸⁾, 해당 조항은 부칙¹⁹⁾에 의거하여 2026년 10월 8일까지만 유효함.

○ 이와 관련하여 보완계정의 재원에 대한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²⁰⁾(이

1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보완계정의 조성) ① 보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회사의 출연금
3. 보증료 수입금
4.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5. 보완계정의 운용수익금
6. 정부가 관리·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7. 보완계정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조달한 자금
8. 그 밖에 보완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금융회사 중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만분의 6 이상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1. 은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2. 보험회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3. 상호금융조합 등: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③ 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중 보완계정의 신용보증을 받은 개인의 채권자인 금융회사는 해당 신용보증금액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개인에 대한 대출금의 부실률 등을 감안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9) 법률 제18227호 부칙(2021. 6. 8. 개정, 2021. 10. 9. 시행)

제2조(유효기간)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20) 의안번호 제2214131호, 2025. 11. 11. 발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227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영의원 대표발의)가 발의되어 있는바, 서민금융안정기금의 설치 관련 강준현의원안 심사 시 출연금 조항의 유효기간 삭제와 관련된 이인영의원안을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바. 자활지원계정의 보증료 규정 삭제 등

- 개정안은 기존 진흥원 내 자활계정을 서민금융안정기금으로 이관하고, 자활계정 내 별도의 보증료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보증계정의 보증료 규정을 자활계정에도 준용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제55조의4 삭제, 제55조의5).

현행	개정안
제9절 자활지원계정 제55조의2(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①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u>진흥원</u>에 자활지원계정을 설치한다. ② (생략) 1. ~ 6. (생략) 제55조의4(보증료 등) ① <u>진흥원은 자활지원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는 자로부터 신용보증금액의 연이율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신용보증을 받는 자의 신용도와 자활지원계정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u> ② <u>진흥원은 자활지원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u>	제10절 자활지원계정 제55조의2(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① ----- ----- <u>기금</u> <u>에 -----.</u> ②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u><삭제></u>

<u>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보증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의 연이율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u> 제55조의5(준용규정) 자활지원계정의 보증업무에 관하여는 제50조, 제51조, 제52조제3항 및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완계정”은 “자활지원계정”으로 본다.	제55조의5(준용규정) -----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의----- -----보증----- -----.
---	--

□ 현행법 제55조의4²¹⁾는 자활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는 경우에 대한 보증료 관련 규정을 보완계정의 보증료 규정²²⁾과는 별도로 정하고 있음.

- 2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보증료 등) ① 진흥원은 자활지원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는 자로부터 신용보증금액의 연이율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신용보증을 받는 자의 신용도와 자활지원계정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 ② 진흥원은 자활지원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보증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의 연이율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 2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보증료 등) ① 진흥원은 보완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신용보증을 받는 자의 신용도와 보완계정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 ② 진흥원은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 ③ 진흥원은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보증료의 납부기한까지 보증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보증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에 따라 기금이 설치되면 2개 계정(보증계정, 자활계정)을 기금으로 이관하고, 이후 보증사업은 보증계정에서 통합하여 관리·운용할 계획인바, 자활계정에서 보증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자활계정과 관련된 별도의 보증료 규정을 둘 실익은 적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현재 진흥원이 자활계정에서 수행하는 보증상품으로는 ‘햇살론유스’가 있는데, 개정안 입법 시 금융위원회는 햇살론유스 상품 역시 서민금융안정기금 내 보증계정 소관 사업으로 편입하여 수행할 계획임.

○ 다만, 금융위원회는 추후 자활계정에서 보증사업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증계정의 보증료 관련 규정을 자활계정에서 준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사. 진흥원의 자료제공 요청 범위 확대

- 개정안은 진흥원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에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종합상담·교육·정보제공(법 제2조제5호마목)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등의 알선(법 제24조제1항제2호)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81조).

현행	개정안
제81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진흥원은 제24조제1항제1호(제2조제5호가목·나목·라목 및 사목의 업무에 한정한다)·제4호 또는 제5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81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 -- 제24조제1항제1호(제2조제5호가목·나목·라목·마목 및 사목의 업무에 한정한다)·제2호·제4호 또는 제54조----- ----- ----- ----- ----- -----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진흥원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법 제24조제1항제1호),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동항 제4호), 진흥원의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권 행사(법 제54조)로 제한하고 있음.

○ 또한 이 중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관련 자료요청의 범위는 △저소득층의 창업, 취업, 주거, 의료 및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및 신용보증사업,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및 신용보증사업,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사업,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영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음²³⁾.

2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저소득층의 창업, 취업, 주거, 의료 및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및 신용보증사업

나.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및 신용보증사업

다. 저소득층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라.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사업

마.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종합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바.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 지원

사.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영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아. 그 밖에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4조(진흥원의 업무)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등의 알선

3.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조사·연구 및 대외 교류·협력

4.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5. 진흥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6. 서민금융 지원을 조건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출연과 출자

7. 서민금융 지원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한 출연과 출자

8.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에 대한 자금 지원

9.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및 감독

11. 제29조에 따른 서민금융협의회의 운영 사무

12. 제40조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휴면계정에 출연한 휴면예금등의 관리·운용

13. 제45조에 따라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하여 휴면예금등을 갈음하는 금액의 지급

□ 이에 개정안은 자료제공 요청 범위를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중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종합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법 제2조제5호마목) 관련 사업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등의 알선’(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대해서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서민금융과 관련하여 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비금융 지원 사업에 대하여도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
- 14. 제79조제3항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15. 서민금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16. 그 밖에 서민 금융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제54조(구상권의 행사 등)** ① 진흥원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진흥원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진흥원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지체 없이 진흥원에 보내고 그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③ 진흥원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상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 1. 채무자의 재산이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된 후 남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구상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진흥원은 취득한 구상채권의 사후관리로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구상채권의 보존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담보물의 취득
 - 2. 법적 절차, 그 밖의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구상채권의 행사가 실익이 없는 경우: 구상채권의 상각(償却)
 - ⑤ 구상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⑥ 진흥원은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구상채무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아. 진흥원 임직원의 손해배상 책임

- 개정안은 진흥원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 하여 진흥원에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진흥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진흥원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82조의2(배상책임) ① 진흥원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진흥원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임원은 진흥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진흥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를 처리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흥원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가 아니면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 현행법상 진흥원의 임직원이 진흥원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별도의 배상책임을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일반법인 「민법」상 손해배상 규정²⁴⁾이 적용됨.

24)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 이에 개정안은 진흥원의 기금 관리·운용 등 업무 수행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진흥원의 임직원이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임.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 기금 설치에 따른 조문 정비

□ 개정안은 서민금융안정기금의 설치에 따라 관련 조문에 주체·명칭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 “신용보증”이란 개인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에 대하여 <u>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u> 가.·나. (생략) 8. (생략)	제2조(정의) ----- -----. 1. ~ 6. (현행과 같음) 7. ----- ----- <u>제45조</u> <u>의2에 따른 서민금융안정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u> 가.·나.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제26조(사업수행기관 지원) ① <u>진흥원</u> 은 사업수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 (생략)	제26조(사업수행기관 지원) ① <u>진흥원</u> 및 <u>제45조의2에 따른 서민금융안정기금</u> 은 -----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u>진흥원</u> 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37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u>진흥원</u> 및 <u>제45조의2에 따른 서민금융안정기금</u> 은----- ----- ----- -----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 -----.
② <u>진흥원은</u>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기탁된 기부금품을 사업수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② <u>진흥원 및 제45조의2에 따른 서민금융안정기금</u>은----- -----.
③ (생략) 제38조(회계의 구분처리 및 <u>계정</u> 간 거래) ① <u>진흥원은</u> 관리하는 <u>계정별</u>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38조(회계의 구분처리 및 <u>기금·계정</u> 간 거래) ① ----- <u>기금·계정별</u>로 ----- -----.
② <u>계정</u> 상호 간 자산 및 부채의 이전, 대차 등의 거래 및 <u>진흥원</u> 운영경비의 배정방법 등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② <u>기금·계정</u> ----- -----.
③ 휴면계정과 다른 <u>계정</u> 간 거래 및 휴면계정에 대한 <u>진흥원</u> 운영경비의 배정방법 등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③ ----- <u>기금·계정</u> ----- ----- ----- -----.

□ 개정안에서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존에 진흥원이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업무의 주체 및 진흥원이 관리하던 계정 관련 조문을 일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는바, 해당 조문을 수정하려는 개정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차. 부칙

□ 개정안 부칙 제1조는 본칙 제8조 및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6조(이사회), 제24조(진흥원의 업무), 제54조(구상권의 행사 등), 제81조(배상책임)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로, 그 외에 기금의 설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문의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로 정하려는 것임.

○ 또한 개정안 부칙 제2조는 종전의 진흥원 내 보완계정 및 자활계정을 기금에 설치하는 보증계정 및 자활계정으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규정하면서, 기존에 자활계정으로 수행하던 사업 중 보증계정의 목적 및 용도에 부합하는 사업은 보증계정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7조, 제26조, 제33조, 제37조, 제38조, 제42조,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6,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2조, 제55조의2, 제55조의4, 제55조의5, 제82조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민금융안정기금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서민금융보완계정 및 자활지원계정은 제46조 및 제5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금에 설치하는 서민금융보증계정 및 자활지원계

정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자활지원계정으로 수행하던 사업 중 서민금융보증계정의 목적 및 용도에 부합하는 사업(이에 속하는 자산과 부채,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함한다)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서민금융보증계정으로 이관한다.

□ 개정안 부칙 제1조는 서민금융안정기금의 본격적인 설치·운용 관련 사항은 2027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도록 하고, 그 외의 사항은 보다 조기에 시행하도록 규정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개정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 등이 변경되므로 기존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08